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Twenty-seventh meeting of the Plants Committee
Geneva (Switzerland), 8 – 13 July 2024

Regulation of trade

A GUIDE TO THE APPLICATION OF CITES SOURCE CODES

This information document has been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agenda item 22.*

* *The geographical designations employed in this document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the CITES Secretariat (or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or area,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or boundari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rests exclusively with its author.*

CITES 출처 코드 적용 지침

A Guide to the application of CITES source codes



CITES 출처 코드 적용 지침

A Guide to the application of CITES source codes



A Guide to the application of CITES source codes
by Jessica A. Lyons, Daniel J. D. Natusch and Robert W. G. Jenkin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English language by CITES Secretariat
© CITES Secretariat, 2017

Prepared under contract for the CITES Secretariat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Rue
Mauverney 28, 1196 Gland, Switzerlan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for educational or other non-commercial purposes is authorized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Reproduction for resale or other commercial purposes by any means - photographic,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taping or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 is prohibited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The geographical designations employed in this book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the compilers or the CITES Secretariat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or area,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or boundaries.

CITES Secretariat
Maison internationale de l'environnement
Chemin des Anémones
CH-1219 Châtelaine, Genève
Switzerland

E-mail: info@cites.org
Web: www.cites.org

CITES 출처 코드 적용 지침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8
All right reserved.

Publication Date: 20, December, 2018
Translated by Tae-Kwon Noh, Seon-Man Kweon and Jina Choi
Supervised by Byoung-Yoon Lee

Published by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42, Hwangyeong-ro, Seo-gu, Incheon 22689, Republic of Korea
www.nibr.go.kr

ISBN: 978-89-6811-377-2 93360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Number: 11-1480592-001508-01

This is not for sale.
Printed by Doohyun Publishing co. in Republic of Korea

CITES 출처 코드 적용 지침

발행일 2018. 12. 20
번역 노태권, 권선만, 최진아
디자인·기획제작 도서출판 두현
발행인 이병윤
발행기관 국립생물자원관
발행처 주소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Tel. 032 590 7000 <http://www.nibr.go.kr>

2018 © 국립생물자원관

ISBN 978-89-6811-378-9 93360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508-01

목차

1. 서론	03
2. 현재 사용되는 출처 코드와 생산 체계	04
3. 출처 코드 검색표	05
4. 출처 코드 R 적용에 대한 추가 지침	08
5. 출처 코드 C 적용에 대한 추가 정보	10
6. 주요 용어 정의	11
7. 추가 자료	13
부록 출처 코드 결정을 위한 조사지	26
참고자료 인공증식 식물 관련 추가 출처 코드 관련 정보	33

1. 서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이하 ‘CITES’)의 역할은 CITES에 등재된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조절함으로써 야생에서 생존을 위협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국제 거래되는 표본을 생산하는 각각의 체계마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구분되어야 하며, 야생 개체군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CITES는 CITES 관련 거래의 허가서나 인증서에 각 생산 체계를 의미하는 출처 코드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통해서 표본의 생산 방식 및 협약의 적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 태어난 동물의 CITES 허가서나 인증서에는 야생 개체를 의미하는 출처 코드 ‘W’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CITES 등재종의 거래에 이용되는 출처 코드는 10개이며 각각에 대하여 ‘2. 현재 사용되는 출처 코드와 생산 체계’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당사국이 CITES 종의 출처 코드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15차 CITES 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 2010. 3. 10-25)에서는 CITES 사무국에 다음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문 15.52이 채택되었다.

“관련 전문가와 계약하여 당사국의 출처 코드의 적절한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지침을 동식물위원회의 자문 및 의견을 받아서 개발……”

이 결정문에 따라 CITES 사무국은 IUCN에 위탁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업무의 결과물로 CITES 당사국들이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표본의 출처 코드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현재 사용되는 출처 코드와 생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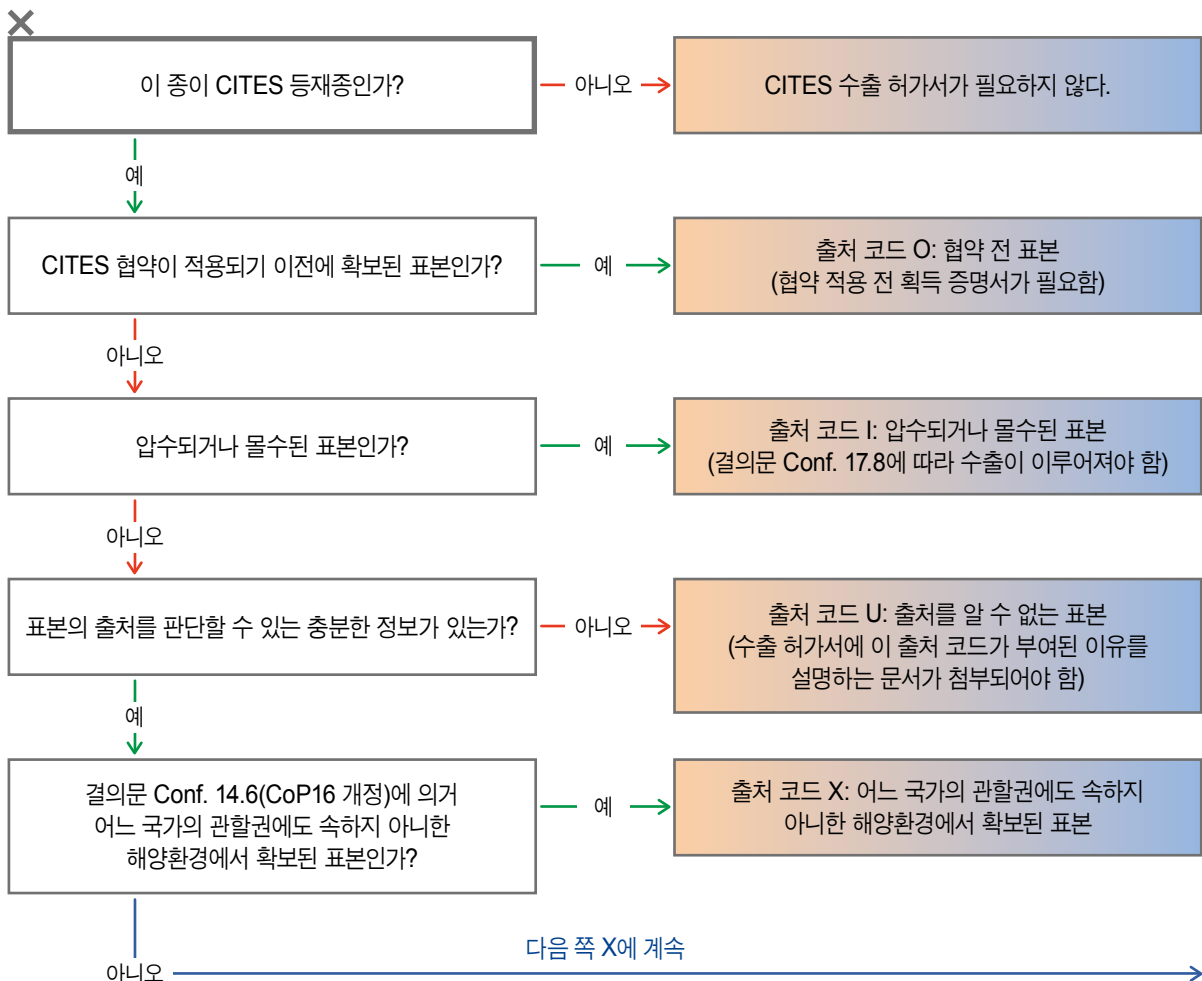
결의문 Conf. 12.3(CoP17 개정) 및 CITES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출처 코드의 정의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CITES 용어집(<http://www.cites.org/eng/resources/terms/glossary.php>)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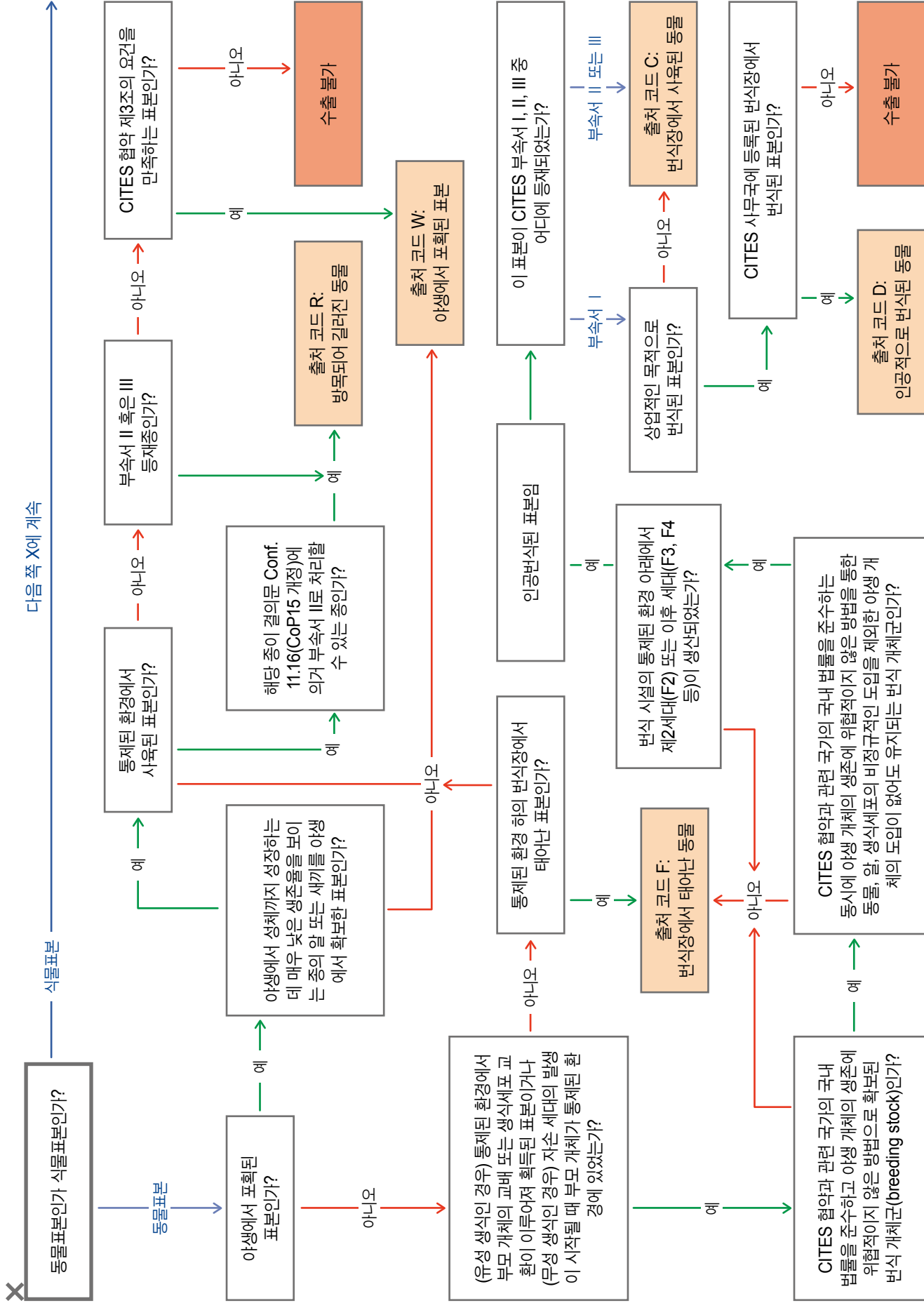
출처 코드	출처 코드 설명	CITES 부속서	정의
W	야생	I, II, III	야생에서 채취/포획된 표본
X	해양환경	I, II, III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한 해양환경’에서 확보된 표본
R	방목되어 길러진 동물	I, II, III	자연 상태에 그대로 둘 경우 성체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낮은 알 혹은 어린 개체를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한 동물의 표본
D	인공적으로 번식된 동물 또는 인공증식된 식물	I	상업적인 목적으로 CITES사무국에 등록된 번식장(결의문 Conf. 12.10(CoP15 개정)에서 인공적으로 번식된 부속서 I 등재 동물과 협약문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출되는 부속서 I 등재 식물이나 그 부분물
A	인공증식된 식물	I, II, III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과 그 식물의 부분물, 파생물로 협약문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출되는 표본(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출되는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III 등재식물)
C	번식장에서 사육된 동물	II, III	결의문 Conf. 10.16(개정)에 따라 번식장에서 사육된 동물과 그 동물의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로 협약문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출되는 경우
F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	I, II, III	번식장 안에서 태어난 동물(F1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포함)과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결의문 Conf. 10.16(개정) ‘번식장 안에서 사육된 동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U	출처 미상	I, II, III	표본의 출처를 알 수 없음(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I	압수 및 압류품	I, II, III	압수되거나 몰수된 표본(단독으로 사용 불가, 다른 출처 코드와 함께 사용)
O	협약 전 표본	I, II, III	해당 종에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된 표본(관리당국이 발급한 ‘협약 적용 전 획득 증명서’가 있는 경우, 국제 거래를 위한 별도의 CITES 허가서 불필요)

3. 출처 코드 검색표

각 당사국이 정확하게 출처 코드를 적용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검색표를 개발하였다. 검색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되는 표본의 출처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X에서부터 시작한다.
2. 각 질문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예' 또는 '아니오'의 답으로 연결되는 화살표로 이동한다. 최종 결론은 별도의 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글상자에 제시되어 있다.
3. 별도 지침 등 추가 참조가 필요한 경우 글상자에 '*' 표시로 표기되어 있다(4~7절 참조).
4. 검색표를 적용하였음에도 출처 코드가 확실하지 않은 표본이 있다면 CITES 사무국에 문의한다.
5. CITES 등재 표본에 있어서 면제 조건이나 특별 적용 조항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면제 조건 및 특별 적용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본 보고서의 7절에 제시하였다
6. 아래 검색표와 동일한 정보를 질문지 형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양식을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26 쪽 '출처 코드 결정을 위한 조사지' 참조).





4. 출처 코드 R 적용에 대한 추가 지침

CITES가 정의하는 ‘방목(ranching)’이란, 야생에서는 성체가 될 때까지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동물의 알 또는 어린 새끼를 확보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결의문 Conf. 11.16(CoP15 개정)에서 방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여기에 출처에 대한 신고와 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당사국이 출처 코드 ‘R’의 정확한 적용에 있어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체가 될 때까지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의 의미는?

성체가 될 때까지 생존 가능성은 해당 표본이 방목될 수 있는 종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검토 사항이다. 생존 가능성은 종의 생활사 전략(life-history strategy)과 관련이 깊다. 즉, 생활사 전략에 따라 많은 수의 새끼를 낳지만 이 중 소수만 성체까지 생존하는 r-전략종(r-selected)과 적은 수의 새끼를 낳으나 성체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은 k-전략종(k-select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다거북, 악어, 경골어류 및 대부분의 무척추동물은 r-전략종으로 많은 알을 낳고 그 중 오직 일부만 생존하여 성체가 된다. 반면에 코끼리나 고양이과의 대형 동물들은 k-전략종으로 새끼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각 개체의 생존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그러므로 방목을 위하여 k-전략종의 어린 개체를 포획하는 것이 r-전략종의 어린 개체를 포획하는 것보다 야생 개체의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생산 시스템은 대다수의 새끼가 자연적 원인(예: 포식, 질병, 환경 등)으로 죽는 종의 알이나 새끼들에만 적용할 수 있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사육’의 의미는?

출처 코드 ‘R’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사육’이라는 용어는 해당 종이 인공번식 관리 하에서 성장 또는 발생의 단계와 관련되어야 하는 반면, 해당 종이 사육장에서 지냈던 기간과는 관련이 없다. 분류군 간의 생활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무척추동물의 경우 발생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제된 환경에서 단 2주간 있어도 방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파충류들(예: 성장이 매우 느린 거북)은 방목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사육장에서 매우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사육을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당국은 과학당국과 협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적절한 쉼터, 먹이, 수의학적 치료 등 동물의 생장이나 복지에 필요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인지 여부
- 2) 수출 대기중인 표본의 보유 여부

사육 시설이 생장 및 발달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리당국이 판단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표본은 방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야생 개체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통제된 환경에서의 사육이 방목된 표본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성체가 될 때까지 포획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에 대한 이해

출처 코드 'R'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는 표본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완 동물용으로 거래되는 살아있는 표본은 일반적으로 어린 개체 또는 새끼여야 하며 이들은 수출되기 전 통제된 환경에서 주요한 성장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목이라 볼 수 없다. 반면, 육류나 가죽의 이용을 위하여 수출되는 동물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몸의 크기까지 클 때까지 통제된 환경에서 장기간 사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5. 출처 코드 C 적용에 대한 추가 정보

1. ‘번식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의미하는 출처 코드 ‘C’가 표기된 CITES 수출 허가 신청서를 검토할 때, 해당 표본이 CITES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고려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결의문 Conf. 10.16(개정)에 정의된 ‘번식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정의에 따라 출처 코드 ‘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의 부속서 등급과 수출 목적의 상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3. 만약 표본이 번식장 안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된 부속서 I 종인 경우, 해당 표본은 CITES 사무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번식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해당 허가서 등에 기재된 번식장이 CITES 등록된 번식장 목록 웹사이트(<http://www.cites.org/eng/common/reg/cb/summary.html>)에 포함된 번식장인지 확인한다.
4. 해당 표본이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번식장에서 생산되었음이 분명하다면 출처 코드 ‘D’를 적용한다.
5. 수출 허가 신청자가 CITES에 등록된 번식장에서 생산된 표본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절대로 출처 코드 ‘D’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실제 번식장에서 사육이 이루어졌는지, 야생에서 포획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출처에서 확보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출처를 결정하여야 한다.
6. 해당 표본이 결의문 Conf. 10.16(개정)에서 정의된 ‘번식장에서 사육된 동물’에 부합하는 표본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다 자세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7. 결의문 Conf. 10.16(개정)의 ‘번식장에서 사육된 동물’에 대한 정의에 합당한 번식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 열거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관리당국은 이를 토대로 출처 코드 ‘C’나 ‘F’를 적용하거나 수출 불허를 결정한다.
 - i) 해당 종의 인공 사육이 허가된 번식장인가? 만약 미허가 번식장이라면 적절한 수출인지 바로 조사하여야 한다.
 - ii) 번식장의 최초 허가 또는 등록일자가 언제인가?
 - iii) 충분한 사육 개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생에서 개체의 포획량, 포획기간, 허가종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 iv) 번식시설의 해당 종의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이며, 해당 종의 과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생산 양인지?
 - v) 해당 종이 번식 시설에서 유지되는 총 개체 수와, 부모 군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숙된 암수 개체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 vi) 번식 시설은 과학당국 및 관리당국에 의해 점검을 받았으며 그 점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가?
8. 출처 코드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수입국의 관리당국은 필요에 따라 수출국의 과학당국에 연락하여 수출국의 관리당국 관할 하에 해당 종이 번식장에서 사육된 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CITES 사무국에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6. 주요 용어 정의

다음의 내용은 CITES 홈페이지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CITES 용어집(<http://www.cites.org/eng/resources/terms/glossary.php>)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증식된 식물	<p>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식물 표본이 해당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통제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ii) 재배된 부모 군체나 CITES 협약의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된 종자, 자른 가지, 유합조직, 기타 식물조직, 포자 또는 지정하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씨앗, 자른 가지 및 기타 잘린 부분, 캘러스, 기타 식물조직, 포자, 혹은 기타 주아로부터 성장한 식물 iii) 침향을 생산하는 식물의 경우,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에서 정의된 '재배된 부모 군체'에 따라 재배되었거나 야생의 재배된 부모 군체의 종자, 묘목, 삽목, 접목, 공중취목(marcoting/air-layering), 분주, 식물조직 또는 기타 주아로부터 성장한 식물로 해석
번식장에서 사육된 동물	<p>통제된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생산된 동물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동물만 해당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성생식) 교배되는 부모 개체나 생식세포가 통제된 환경에서 교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성생식) 새끼의 발생이 시작될 때 부모가 통제된 환경에 있는 경우 ii) 번식 개체군이 수출국의 정부 당국의 허가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CITES 협약과 관련 법을 준수하고 야생 개체군의 생존이나 유지에 위협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 b) 과학당국의 검토에 따라 CITES 협약과 관련 법을 준수하고 야생 개체군의 위협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체, 알 또는 생식세포가 일시적으로 추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 개체의 추가없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유전물질의 추가 등 근친 교배 방지 및 완화 목적 - 결의문 Conf. 10.7(CoP15 개정)에 따라 몰수된 동물의 처리 - 예외적으로, 번식 개체군으로 이용 c) - 통제된 환경에서 제2세대(F2) 또는 그 자손세대(F3, F4 등) 생산,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된 환경에서 제2세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이 항상 증명 가능하며, 그 방식이 유지 관리되는 경우
번식 개체군	<p>번식장에서 번식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 전체</p>
<p>통제된 환경 (동물종) / 통제된 환경 (식물종)</p>	<p>동물: 특정 종의 생산을 목적으로 조작된 환경으로, 동물, 알, 생식세포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경계가 분명한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물, 배설물 및 폐기물 처리, 건강 관리, 포식자로부터 보호, 먹이의 인위적 공급 등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단, 이러한 특성이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음).</p> <p>식물: 식물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비자연적 환경을 의미하며,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작된다. 또한, 경작, 비료 사용, 잡초 및 해충 방제, 물 주기, 모판이나 화분 재배 또는 날씨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육묘 활동 등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단, 이러한 특성이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음).</p>

재배된 부모 개체(식물)	<p>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되어 개체의 증식에 사용되며, 수출국의 CITES 당국의 필요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식물체들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TES 협약 및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야생에서 종의 생존이나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 야생에서의 식물 채취 필요성을 최소화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인공증식에 충분한 수량이 유지 단, 예외적인 경우에만 야생 채취가 허용되며, 그 양 역시 재배된 부모 개체의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 제한
---------------	---

7. 추가 자료

추가 자료로 CITES 등재 표본의 협약 면제 조건이나 특별 적용 조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CITES 협약문 제6조 (원문: <http://www.cites.org/eng/disc/text.php#VI>)

제6조 허가서 및 증명서

1.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서와 증명서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출 허가서는 부속서 IV의 양식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며, 발급된 날부터 6월 안에 수출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허가서 또는 증명서에는 이 협약의 명칭,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 관리당국의 명칭·날인 및 관리당국이 부여하는 통제번호가 포함된다.
4. 관리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서 또는 증명서의 사본에는 사본임을 명시하고, 이 사본을 원본에 같음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정해진 범위로 한정한다.
5. 표본의 각 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표본 수입국의 관리당국은 표본의 수입을 위하여 제출된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와 이에 상응하는 수입 허가서를 실효시킨 후 보관한다.
7.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관리당국은 표본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표본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표지라 함은 권한이 없는 자가 모방할 수 없도록 고안된 지워지지 아니하는 압인·납인 또는 표본을 확인하기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말한다

CITES 협약문 제7조 (원문: <http://www.cites.org/eng/disc/text.php#VII>)

제7조
거래 관련 면제 및 그 밖의 특별 규정

1. 표본이 세관의 관할을 받으면서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영토 안에서 경유 또는 환적될 경우에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이 표본에 대하여 적용되기 전에 표본이 획득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이러한 표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개인 소지품이거나 가재도구인 표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제는 관리당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이 표본에 적용되기 전에 표본이 획득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서 I에 포함된 종의 표본이 소유자의 상주국 밖에서 획득되어 상주국으로 수입된 경우

나.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경우에

- (1) 소유자가 상주국 밖의 국가에서 야생상태로부터 분리된 표본을 획득한 경우
- (2) 표본이 소유자의 상주국으로 수입된 경우
- (3) 야생상태에서 표본이 분리된 국가에서 표본 수출에 앞서 수출 허가서의 사전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4. 부속서 I에 포함된 동물 종의 표본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되어 번식된 표본 또는 부속서 I에 포함된 식물 종의 표본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 간주한다.
5.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동물 종의 표본이 사육·번식되었다고 또는 식물 종의 표본이 인공번식되었다고 또는 이러한 동·식물의 부분 또는 파생물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관리당국이 이와 같은 취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서나 증명서에 갈음하여 수락된다.
6.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식엽표본, 보존·건조 또는 포매된 그 밖의 박물관용 표본 및 관리당국이 발급·승인한 표지를 부착한 살아있는 식물이 관리당국에 등록된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어·증여 또는 교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관리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면제하고 허가서나 증명서 없이 이동동물원·극예단·유랑동물원·식물전시회 또는 그 밖의 이동전시회를 구성하는 표본의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수출입자가 표본의 상세를 관리당국에 등록하는 경우

나. 표본이 제2항 또는 제5항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다.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수송되고 보호될 것임을 인정할 경우

결의문 **Conf. 12.3(CoP17 개정)*** (원문: <https://cites.org/sites/default/files/document/E-Res-12-03-R17.pdf>)

결의문 **Conf. 12.3(CoP17 개정)** 허가와 인증

(서론 생략)

1. CITES 허가서 및 인증서 표준화에 관하여

2. 다음을 합의한다.

- a) 협약 제6조 및 관련 결의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출 및 수입 허가서, 재수출 및 CITES 협약 이전의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와 사육번식 및 인공증식 인증서(단, 동 목적을 위하여 식물검역증명서가 사용된 경우는 제외)는 본 결의문의 부록 1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b) 허가서 및 인증서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전자서식 발급에 동의하였다는 전제 하에 종이서식 또는 전자서식으로 발급될 수 있음.
- c) 서식의 발급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양식은 하나 이상의 협약 실무언어(영어, 스페인어 또는 프랑스어)와 자국어가 실무언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국어로 발급되어야 함.
- d) 모든 양식은 문서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함(수입 또는 수출 허가서, 재수출 또는 CITES 협약 이전의 인증서 등)
- e) 서식의 발급 종류와 관계없이, 허가서 또는 인증서 양식에 신청자의 서명란이 존재하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식에 전자 서명이 없다면 해당 허가서 또는 인증서는 무효함.
- f)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부록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별첨된 경우, 이러한 사실과 페이지 수가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부록의 각 페이지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i) 허가서 또는 인증서 번호와 발급일
 - ii) 문서발급 당국의 수기 서명, 날인 또는 가급적 압인된 날인,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전자 형식

3. 다음을 권고한다.

- a) 허가서 및 인증서 양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기존의 문서를 재인쇄 또는 새로운 문서를 도입하기에 앞서 사무국에 자문을 요청함.
- b) 당사국은 허가서 및 인증서의 내용과 서식을 본 결의문에 별첨된 부록 2의 표준양식에 가능한 범위까지 부합하도록 조정함.

* 제13차, 14차, 15차, 16차 및 17차 당사국총회에서 개정됨.

- c) 전자 허가서 및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당사국은 CITES 전자허가 툴킷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도입함.
- d) 외부자금 이용이 가능한 사무국은 요청당사국에 제공할 허가서 및 인증서 인쇄를 보안용지에 진행함.
- e) 남용 또는 위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CITES와 동일한 양식을 국내거래 인증서 양식으로 사용하지 않음.
- f) 추적과 연례보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서 및 인증서 번호는 가급적 서식에 기재된 14개의 문자로 제한함.

WWxxYYYYYY/zz

WW는 발급연도의 마지막 두 자릿수를 의미하고, xx는 해당 국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 코드 두 글자이며, YYYYYY는 일련번호 여섯 자리이고, zz는 당사국이 국내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자릿수 숫자 아니면 문자, 또는 하나의 숫자 및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 g) 당사국은 각 허가서 및 인증서에 다음의 코드를 사용하여 거래의 목적을 명시함.

- T 상업용
- Z 동물원
- G 식물원
- Q 서커스 또는 이동전시회
- S 과학용
- H 수렵기념품
- P 개인용
- M 생물의학 연구를 비롯한 의학용
- E 교육용
- N 야생방사 또는 재방사
- B 사육번식 또는 인공증식
- L 법 단속용, 사법용, 법의학용

- h) 본 결의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수렵기념품’라는 용어는 동봉되는 모든 CITES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명시되는 전체 동물(whole animal) 또는 즉시 식별이 가능한 동물의 부분물 또는 파생물로 다음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 i) 날것이거나 가공된 또는 제조된 것

- ii) 사냥꾼이 개인용으로 사냥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함
 - iii) 원산지에서 사냥꾼의 상주국으로 최종 이송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사냥꾼에 의해 또는 사냥꾼을 대신하여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됨
- i) 표본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코드가 사용된다.
- W 야생에서 포획된 표본
 - X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한 해양환경’에서 취득한 표본
 - R 방목 표본: 성년기까지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야생에서 알 또는 어린 동물일 때 포획되어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 표본
 - D 결의문 Conf. 12.10(CoP15 개정)에 의거하여 사무국 등록부에 등재된 시설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번식된 부속서 I 등재 동물,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부속서 I 등재 식물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 협약 제7조제4항의 조항에 따라 수출됨
 - A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제7조제5항의 조항에 따라 수출됨(비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부속서 I 등재종 표본 및 부속서 II 및 III 등재종 표본)
 - C 결의문 Conf. 10.16(개정)에 따라 사육번식된 동물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제7조제5항의 조항에 따라 수출됨
 - F 사육번식 상태에서 출생한 동물(F1 또는 그 이후의 세대)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결의문 Conf. 10.16(개정)의 ‘사육번식’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것
 - U 출처 미상 표본(정당한 사유 기재)
 - I 물수 또는 압수된 표본
 - O CITES 협약 이전의 표본
- j) 거래되는 표본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하여 허가서 및 인증서에 사용되는 용어와 코드는 사무국에서 제공한 CITES 연례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지침의 최신판과 일치하며, 측정 단위 역시 동 지침을 따라야 함.
- k) 모든 당사국은 전자 허가서 및 인증서의 개발과 사용을 고려함.
- l) 모든 당사국은 종이 허가서 및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보안용지 사용을 고려함.
- m) 아직 그리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각 허가서 및 인증서에 보안 날인함.
- n)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보안날인할 경우, 이는 서명과 날인 또는 가급적 압인으로 취소되며 날인의 개수 또한 문서에 기록됨.

- o) 허가서 및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사국은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표준 명명법에 따라 증명(種名)을 표기함. (결의문 Conf. 12.11(CoP17 개정) 참조)
- p) 아직 그리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허가서 및 인증서 서명 권한을 보유한 이들의 성명과 3개의 서명 표본을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국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서명 권한 보유자 목록에 추가된 이들의 성명, 더 이상 권한이 없는 이들의 성명 및 동 변경이 발효한 일자를 사무국에 한 달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q) 이용된 수송 수단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문서의 번호가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기재되어야 함.
- r) 각 당사국은 협약 제14조제1항제가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보다 엄격한 국내조치에 대하여 직접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당사국은 해당 조치에 반하는 허가서 또는 인증서 발급을 삼가 함.
- s) 허가서 또는 인증서가 취소,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발급 관리당국은 목적국의 관리당국과 사무국에 상업적 선적에 관하여 즉시 통보함.
- t) 취소, 분실, 도난, 파손 또는 만료된 문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허가서 또는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동 허가서나 인증서는 대체되는 문서번호와 대체 사유를 명시함.
- u) 관리당국이 하나 이상의 CITES 등재종 부분물 또는 파생물을 포함하는 제조품에 대한 허가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능한 다음을 실시한다.
 - i) 거래되는 각 제조품 종류당 하나의 허가서 또는 인증서가 발급되도록 보장함
 - ii) 해당 허가서 또는 인증서가 하나 이상의 CITES 등재종을 포함하는 제조품과 관련된 것이라는 언급을 포함함
 - iii) 제조품에 포함된 부분물 또는 파생물을 공급한 모든 CITES 등재종을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기재함
 - iv) 명기된 각 종에 대하여 제조품 종류와 제품에 포함된 CITES 표본 종류를 기재함
 - v) 허가서 또는 인증서가 다루는 제조품의 총수를 분명하게 기재함

II. 수출 허가서 및 재수출 인증서에 관하여

- 4. 재수출 인증서는 다음을 또한 명시할 것을 동의한다.
 - a) 원산지 국가, 동 국가의 수출 허가서 번호 및 발급일
 - b) 최종 재수출국, 동 국가의 재수출 인증서 번호 및 발급일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c) 상기에 언급된 모든 정보의 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
5. 다음을 권고한다.
- a) 수출업체는 예정된 수출 직전에 허가서를 신청하도록 장려한다.
 - b) 관리당국은 각 허가서 당 수출되어야 할 표본의 수 또는 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가능한 한, 실제로 수출 예정인 수나 양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c) 사용되지 아니한 허가서에 대한 대체요청이 발생할 경우, 원본이 발급당국으로 반납될 때에만 대체 허가서를 발급하되, 원본이 분실된 경우는 제외함. 후자의 경우, 발급관리당국은 목적국 관리당국에 허가서 원본이 취소 및 대체되었음을 통보한다.
 - d) 수출업체가 수출 허가서에 승인된 수량보다 적은 수 또는 양의 표본을 수출하는 데에 허가서를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여분을 수출하기 위한 허가서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관리당국은 새로운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기존의 수출 표본 수 또는 양에 대한 증거를 입수한다. (허가서 원본으로 수입된 표본의 수 또는 양에 대한 목적국 관리당국의 확인서 또는 유효한 수출 허가서 사본 등)
 - e) 표본의 수출 및 재수출 여부를 분명히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및 재수출된 표본은 동일한 문서로 다루지 아니한다.
 - f) 수입 후 양식이 변경되지 아니한 표본에 대하여 재수출 허가서가 발급되는 경우, 수입 시 승인된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사용된 동일한 측정 단위가 사용되어야 한다.
 - g) 협약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조항은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 인증서가 승인된 날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동 유효기간 외에는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위하여 수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h) 상기 언급된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목재종과 관련하여 제11절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 인증서는 무효하며 그 어떠한 법적 효력도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 i) 과거 해당 표본이 몰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표본은 비록 그것이 국내법에 따라 수입되었을지라도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j) 당사국은 표본이 원산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 아님을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k) 당사국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수출 허가서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서 I 표본의 출처와 해당 표본이 CITES 등록 사육시설 태생이 아님을 검증한다.
 - l) 문서 및 선적 검열은 가능한 수출이 이루어질 시에 실시함. 이는 살아있는 동물의 선적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6. 원산지에서 수출되었을 당시의 CITES 조항에 따른 면제 자격을 상실한 식물 표본의 경우, 해당 표본의 원산지를 처음 자격을 상실한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동의하며

7.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당사국은, 만약 유용하다고 간주할 경우, 다음 문구를 재수출 인증서의 5번 란에 ‘CITES 조항의 면제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되었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면제가 무엇인지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III. 수입 허가서에 관하여

8. 부속서 I 등재종 표본에 대한 수입 허가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표본이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표본의 경우, 수령자가 해당 표본을 적절히 보관하고 관리할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9. 다음을 권고한다.
 - a)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조항은 수입 허가서가 승인된 날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동 유효기간 외에는 수입 허가를 위하여 수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b) 상기 언급된 12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수입 허가서는 무효하며 그 어떠한 법적 효력도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IV. CITES 협약 이전의 인증서에 관하여

10. CITES 협약 이전의 인증서는 다음을 또한 명시할 것을 동의한다.
 - a) 동 인증서가 다루는 표본이 CITES 협약 이전에 취득된 것임.
 - b) 제13차 당사국총회(방콕, 2004년)에서 채택되었으며 제16차 당사국총회(방콕, 2013년)에서 개정된 결의문 Conf. 13.6(CoP16 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표본의 취득일

(중간 생략)

CITES 허가서와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부록 1

- a) 협약 전체 명칭과 로고
- b)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전체 명칭 및 주소
- c) 고유 관리번호
- d) 수출자와 수입자의 전체 이름 및 주소
- e) 채택된 표준 명명법에 따라 표본의 종의 학명(또는 해당 분류군이 어떤 부속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아종의 학명)
- f) 사무국에서 배포한 명명법을 사용하여 3개의 협약 실무언어 중 하나로 된 표본에 대한 설명
- g) 표본에 표시가 있거나 또는 당사국총회 결의문이 표시를 규정한 경우, 표본에 나타나는 표시의 수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부속서 I에 포함된 동물을 사육번식하는 시설로부터 비롯하여 당사국총회가 승인한 할당량의 적용을 받는 목장으로부터의 표본 등) 혹은 마이크로칩 자동무선레이더(transponder)로 표시한 경우, 마이크로칩 코드, 자동무선레이더 제조사명,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 내 마이크로칩의 위치
- h) 종, 아종 또는 개체군이 등재된 부속서. 주의: 해당 표본이 다른 부속서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는 변경되지 않음. 가령,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번식된 부속서 I 등재종 표본이 부속서 II 등재종 표본으로 간주되더라도, 해당 종은 부속서 I에 등재된 것으로 유지되며 이는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i) 표본의 출처
- j) 표본의 수량 및 적절한 경우 사용된 측정 단위
- k) 발급일 및 만기일
- l) 종이 허가서 및 인증서를 위한 서명자의 성명과 자필 서명 또는 전자 허가서 및 인증서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자 형식
- m) 관리당국의 압인된 날인이나 잉크 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형식
- n) 살아있는 표본에 대한 허가서인 경우, IATA 살아있는 동물규정(*IATA Live Animals Regulations*)(동물용) 및 IATA 부패성 화물규정(식물용) (*IATA Perishable Cargo Regulations*), 또는 비항공 수송의 경우,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의 비항공 수송에 대한 CITES 지침(*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을 수송조건이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가서가 유효하다는 문구
- o) 허가서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사육번식 또는 인공증식(제7조제4항)을 하는 시설에서 유래한 부속서 I 종의 표본에 관한 것인 경우, 사무국이 부여한 시설 등록번호 및 동 시설이 수출자가 아닌 경우, 해당 시설의 명칭


p) 수출시 검사를 실시한 당국의 날인, 압인, 서명으로 인증된 수출된 표본의 실제 수량

원산지증명서에만 포함될 내용

q) 표본이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유래했다는 문구

표준 CITES 양식, 지침 및 설명

부록 2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OR FLORA		1. 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EXPORT 수출 <input type="checkbox"/> RE-EXPORT 재수출 <input type="checkbox"/> IMPORT 수입 <input type="checkbox"/> OTHER: 기타			원본
		2. 유효기간			
3. 수입자		4. 수출자/재수출자(성명·주소·국명)			
3a. 수입국					
5. 특별사항 해당 허가서가 살아있는 표본을 다루는 경우, IATA 살아있는 동물규정(동물용) 및 IATA 부패성 화물규정(식물용), 또는 비행공 수송의 경우,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의 비행공 수송에 대한 CITES 지침을 수송조건이 준수하는 경우에만 본 허가서 또는 인증서가 유효함		6. 성명·주소·국가/날인/날인·관리당국의 국가			
5a. 거래목적(뒷면참조)		5b. 보안날인 번호			
7./8. 학명(속명·종명) 및 통속명		9. 표본기재(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성별·연령)	10. 부속서 번호 및 출처(뒷면 참조)	11. 표본수량(단위포함)	11a. 총수출할당량
A	7./8.	9.	10.	11.	11a.
	12. 원산지★		12a. 최종재수출국 허가번호 날짜		12b. 시설번호 또는 취득일***
B	7./8.	9.	10.	11.	11a.
	12. 원산지★ 허가번호 날짜		12a. 최종재수출국 허가번호 날짜		12b. 시설번호 또는 취득일***
C	7./8.	9.	10.	11.	11a.
	12. 원산지★ 허가번호 날짜		12a. 최종재수출국 허가번호 날짜		12b. 시설번호 또는 취득일***
D	7./8.	9.	10.	11.	11a.
	12. 원산지★★ 허가번호 날짜		12a. 최종재수출국 허가번호 날짜		12b. 시설번호 또는 취득일***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채취되거나 사육번식 또는 인공증식된 국가(재수출의 경우) ★★상업목적으로 사육번식 또는 인공증식된 부속서 1의 생물에 한함 ★★★CITES 협약 이전의 표본					
13. 허가서/인증서 발급기관					
장소		날짜		보안날인, 서명 및 감독관 날인	
14. 수출 승인:		15.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번호			
7란	수량	수출항	날짜	서명	감독관 날인 및 직함
A					
B					
C					

작성방법(표준 CITES 서식 내 박스 안에 기재된 번호에 따른 설명입니다)

1. 문서의 종류에 맞게 사각형에 표시(수출 허가서, 재수출 인증서, 수입 허가서 및 기타)합니다. 기타 란에 표시할 경우, 문서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가번호는 관리당국에 의해 각 문서에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2. 수출 허가서와 재수출 인증서의 경우, 문서의 만료일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수입 허가서는 1년).
3.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 3a. 국가명은 반드시 공식명칭으로 기입합니다.
4. 수출자/재수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국가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허가서 또는 인증서는 무효합니다.
5. 특별사항이란 국가법률이나 발급 관리당국의 선적관련 특별조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특정 정보생략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a. 사용되는 코드: T-상업용, Z-동물원용, G-식물원용, Q-서커스 및 순회전시(공연)용, S-과학 연구용, H-수렵기념품, P-개인용, M-의학용, E-교육용, N-야생 재방사 또는 방사용, B-사육번식 또는 인공증식용, L-법단속·사법·법의학용
- 5b. 13란에 날인된 보안날인 번호를 기입합니다.
6.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명칭·주소·국가는 미리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 7-8. 협약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된 참고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생물의 학명(속명·종명·아종명)과 허가서 발급국가에서 불리는 보통명을 적습니다.
9. 거래되는 표본에 대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살아있는 동물, 가죽, 옆구리, 지갑, 신발 등)합니다. 만약 표본에 식별표시가 되어 있다면(태그, 식별표시, 가락지 등), 그것이 당사국총회 결의문에 의해 요구되는(방목 사업을 위한 표본, 당사국총회에서 허가된 할당량에 필요한 표본, 상업목적을 위해 사육번식된 부속서 I에 등재된 종의 표본)지의 여부, 식별표시의 종류와 번호를 기입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가급적 성별과 연령을 기록합니다.
10. 해당 종의 부속서 등급을 기재합니다.

출처에 사용되는 코드

W	야생에서 포획된 표본
X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한 해양환경'에서 취득한 표본
R	방목 표본: 성년기까지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야생에서 알 또는 어린 동물일 때 포획되어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 표본
D	결의문 Conf. 12.10(CoP15 개정)에 의거하여 사무국 등록부에 등재된 시설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번식된 부속서 I 등재 동물,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부속서 I 등재 식물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협약 제7조제 4항의 조항에 따라 수출됨
A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제7조제5항의 조항에 따라 수출됨(비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부속서 I 등재종 표본, 그리고 부속서 II 및 III 등재종 표본)
C	결의문 Conf. 10.16(개정)에 따라 사육번식된 동물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제7조제5항의 조항에 따라 수출됨
F	사육번식 상태에서 출생한 동물(F1 또는 그 이후의 세대) 및 그 부분물과 파생물로 결의문 Conf. 10.16(개정)의 '사육번식'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것

U	출처 미상 표본(정당한 사유 설명)
I	몰수 또는 압수된 표본
O	CITES 협약 이전의 표본(다른 출처코드와 함께 사용가능)

11. 수량과 단위는 CITES 연례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지침의 최신판에 따라 적습니다.
- 11a. 허가서의 표본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수출 표본 총수와 그 종의 해당연도의 할당량을 기입(예. 500/1000)합니다. 이는 당사국총회 및 국가별 할당량을 따라야 합니다.
12. 원산지는 CITES 표본이 야생에서 포획되거나, 사육번식 및 인공증식된 곳을 의미하되, 조항 면제 자격을 상실한 식물 표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한 경우, 원산지에서 해당 표본이 면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출국의 허가서 또는 인증서 번호와 허가서 발급일을 기입합니다. 모든 또는 일부분의 정보를 모를 경우,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동 란은 재수출의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12a. 최종 재수출국은 동 문서가 발급된 국가에 반입되기 전 표본이 재수출된 곳을 의미합니다. 최종 재수출국의 재수출 인증서 번호와 발급일을 기입합니다. 모든 또는 일부분의 정보를 모를 경우,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입합니다. 동 란은 이전에 재수출된 표본의 재수출의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12b. '시설 번호'란 사육번식 또는 인공증식 시설의 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획득일'은 결의문 Conf. 13.6 (CoP16 개정)에 정의되어 있으며 CITES 협약 이전의 표본에만 해당됩니다.
13. 허가서 발급 감독관이 작성합니다. 감독관의 성명은 전체이름으로 기입합니다. 동 란에 보안날인을 하고, 이는 발급 감독관의 서명, 날인 또는 봉인으로 취소됩니다. 봉인·서명·보안날인번호는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14. 수출 또는 재수출시, 선적 조사감독관이 작성합니다.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표본의 실제 수량을 기입하며, 사용하지 않는 란은 삭제합니다.
15. 이용된 수송 수단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본 문서는 하나 이상의 협약 실무언어(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작성 또는 이 중 하나의 언어로 문서 전체를 번역하여야 합니다. 표본의 수출 및 재수출 여부를 분명히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및 재수출된 표본은 동일한 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관리당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후략)

부록. 출처 코드 결정을 위한 조사지

1. CITES 등재증인가?

예 질문 2번으로

아니오 CITES 수출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2. 만약 이 종이 현재 CITES종이라면, 이 표본이 협약에 등재되기 전에 확보되었는가?

예 출처 코드 O

아니오 질문 3번으로

3. 압수되거나 몰수된 표본인가? 결의문 Conf. 17.8에 따라 수출한다.

예 출처 코드 I

아니오 질문 4번으로

4. 표본의 출처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가?

예 질문 5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U

5.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한 해양환경에서 확보된 표본인가?

예 출처 코드 X

아니오 질문 6번으로

6. 동물표본인가 식물표본인가?

동물표본 질문 7번으로

식물표본 질문 21번으로

7. 야생에서 포획된 표본인가?

예 질문 8번으로

아니오 질문 13번으로

8. 야생에서 성체까지 성장하는데 매우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종의 알 또는 새끼를 야생에서 확보한 표본인가?

예 질문 9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W

9.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된 표본인가?

예 질문 10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W

10. 해당 종이 결의문 Conf. 11.16(CoP15 개정)에 의거 부속서 II로 처리할 수 있는 종인가?

예 출처 코드 R

아니오 질문 11번으로

11. 부속서 II 혹은 III 등재종인가?

예 출처 코드 R

아니오 질문 12번으로

12. CITES 협약 제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표본인가?

예 출처 코드 W

아니오 수출 불가능

13. 해당 표본의 부모 개체를 고려할 때, (유성 생식인 경우) 통제된 환경에서 부모 개체의 교배 또는 생식세포 교환이 이루어져 획득된 표본이거나 (무성 생식인 경우) 자손 세대의 발생이 시작될 때 부모 개체가 통제된 환경에 있었는가?

예 질문 15번으로

아니오 질문 14번으로

14. 통제된 환경 하의 번식장에서 태어난 표본인가?

예 출처 코드 F

아니오 출처 코드 W

15. CITES 협약과 관련 국가의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야생 개체의 생존에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된 번식 개체군(breeding stock)인가?

예 질문 16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F

16. CITES 협약과 관련 국가의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 동시에 야생 개체의 생존에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한 동물, 알, 생식세포의 비정규적인 도입을 제외한 야생 개체의 도입이 없어도 유지되는 번식 개체군인가?

예 질문 17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F

17. 번식 시설의 통제된 환경 아래에서 제2세대(F2) 또는 이후 세대(F3, F4 등)이 생산되었는가? 혹은 통제된 환경 아래에서 2세대 자손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예, 번식 시설에서 사육된 표본이다 질문 18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F

18. 이 표본이 CITES 부속서 I, II, III 중 어디에 등재되었는가?

부속서 I 질문 19번으로

부속서 II 또는 III 출처 코드 C

19. 상업적인 목적으로 번식된 표본인가?

예 질문 20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C

20.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번식장에서 번식된 표본인가?

예 출처 코드 D

아니오 수출 불가능

21. 통제된 환경에서 성장한 표본인가?

예 질문 22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W

22.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에 제시된 ‘재배된 부모 개체(parental stock)’에서 유래된 종자, 자른 가지, 부분, 유합조직(callus tissues), 기타 식물조직, 포자 혹은 기타 주아(propagules)로부터 성장한 표본인가?

예 질문 26번으로

아니오 질문 23번으로

* 접목된 식물들의 경우, 대목과 접목된 가지 모두 인공증식된 식물인 경우에만 인공증식된 식물로 인정할 수 있다.

23.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에 제시된 면제 요건에 적합하게 야생에서 채취된 종자나 포자로부터 성장한 표본인가?

예, 번식 시설에서 사육된 표본이다 질문 26번으로

아니오 질문 24번으로

24. 자르거나 포기나누기를 통해 성장한 표본인가?

예 질문 25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W

25. 재배된 부모 개체로 볼 수 없는 야생 식물을 자르거나 포기를 나눈 식물에서 확보한 표본인가?

예 출처 코드 W

아니오 질문 26번으로

26. 이 종이 CITES 부속서 I, II, III 중 어디에 등재되었는가?

부속서 I 질문 27번으로

부속서 II 또는 III 출처 코드 A

27. 이 표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되었는가?

예 질문 28번으로

아니오 출처 코드 A

28. CITES에 등록된 양묘장에서 인공증식된 표본인가?

예 출처 코드 D

아니오 출처 코드 A

인공증식 식물 관련 추가 출처 코드 관련 정보

CITES 등재 식물의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양이 거래되는 출처 코드는 인공증식(A)이다. 그러나 인공증식의 정의의 적용에 있어 식물종에 따라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혼란이 오랫동안 있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CITES의 식물 관련 회의마다 진행되었다.

2018년 7월 개최된 제24차 CITES 식물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식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인간이 관여하여 조성된 환경에서 자란 식물에 대하여 새로운 출처 코드 'Y'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 '식물의 거래에 대한 규제'의 개정안을 2019년 5월 개최되는 제18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만약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결의문 수정 및 새로운 출처 코드에 대하여 채택된다면, 2019년 하반기부터 CITES 거래에 적용될 것이다. 본 책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에 대하여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차원에서 해당 결의문 개정안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실고자 한다.

출처: <https://cites.org/sites/default/files/eng/com/pc/24/com/E-PC24-Com-06-R.pdf>

Conf. 11.11(Rev. CoP1X)¹⁾

Regulation of trade in plants

Proposed revised Resolution Conf. 11.11 (Rev. CoP17) on Regulation of trade in plants. Proposed new language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indicated with ~~strikethrough~~.

RECALLING Resolution Conf. 9.18 (Rev.),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ninth meeting (Fort Lauderdale, 1994) and amended at its 10th meeting (Harare, 1997),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CITES for plants;

AWARE that the Convention provides measur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certain species of wild plants against over-exploitation through international trade;

AWARE that the text of the Convention and several of the Resolut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plants may not or could not have been drafted in the light of modern developments in plant propagation and of the trade in artificially propagated plants;

RECALLING the many specific problems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have faced and still fac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r plants;

RECOGNIZING that there are unique aspects of the plant trade and plant biology, such as those related to flaked orchid seedlings, that are not considered analogous to those for animals and that a different approach for plants is sometimes necessary;

RECOGNIZING that the control of the trade in flaked seedlings of orchids from closed nursery systems generally is not considered to be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populations of orchid species;

RECOGNIZING that many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egulating international trade in plants under the Convention involve artificially propagated specimens;

RECOGNIZING that there are plant species that are propagated and grown in diverse production systems with various degrees of human intervention, that may have different levels of impact on wild populations;

RECOGNIZING also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III of the Convention remain the basis for permitting trade in specimens of Appendix-I species of plants that do not qualify for the exemptions of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VII;

NOTING that import of wild-collected specimens of Appendix-I plant species for purposes of establishing a commercial operation for artificial propagation is precluded by Article III, paragraph 3

¹⁾ Amended at the 13th, 14th, 15th and 17th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corrected by the Secretariat following the 16th meeting.

Conf. 11.11(COP1X 개정)¹⁾**식물의 거래에 대한 규제**

결의문 Conf. 11.11(CoP17 개정) '식물의 거래에 대한 규제' 개정안으로 신규로 추가된 문구는 밑줄, 삭제된 부분은 가운데 줄로 표기하였음

식물에 대한 CITES의 이행에 관하여 제9차 당사국총회(포르트로더데일, 1994)에서 채택되어 제10차 당사국총회(하라레, 1997)에서 개정된 결의문 Conf. 9.18(개정)을 상기하고,

협약이 국제 거래를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특정 야생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을 인식하며,

협약과 몇몇 당사국총회 결의문이 식물 증식 및 인공증식된 식물의 거래에서의 새로운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지 않았거나 그럴 수 없었음을 인식하며,

식물을 위하여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의 당사국이 겪은 그리고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많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상기하며,

용기에 담긴 난초 유묘에 관련된 경우와 같이, 동물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간주되는 식물 거래 및 식물 생태에 독특한 측면이 있으며 때때로 식물을 위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용기에 담긴 난초 유묘의 거래에 대한 규제는 난초 종의 자연 개체군의 보호와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인식하며,

협약에 의거하여 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발생하는 상당 부분은 인공증식된 표본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며,

인간의 간섭 수준이 상이한 매우 다양한 생산 시스템이 식물의 증식이나 재배에 이용되며, 이에 따라 야생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다양함을 인식하며,

또한, 협약 제3조의 규정들이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들의 부속서 I 종 등재 표본의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인공증식용 상업적 운영조직 구축 목적으로 부속서 I 식물종의 야생수집 표본의 수입이 제5차 당사국총회(부에노스아이레스, 1985)에서 채택되어 제15차 회의(도하, 2010)에서 개정된 결의문 Conf. 5.10(CoP 15 개정) 상에서 추가로 설명된 대로 협약의 제3조제3항제다호에 준하여 배제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¹⁾ 제13차, 14차, 15차, 17차 당사국총회에서 개정된 후 제16차 당사국총회 후에 사무국에 의해 정정.

(c), of the Convention, as explained further in Resolution Conf. 5.10 (Rev. CoP15),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fth meeting (Buenos Aires, 1985) and amended at its 15th meeting (Doha, 2010);

OBSERVING that certain Parties that authorize export of large quantities of artificially propagated plants need to find ways of reducing paperwork while maintaining protection for wild plants, and helping exporters of artificially propagated plants to understand a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WARE that plant specimens may legally enter international trade under exemptions from the provisions of CITES, provided by an annotation, and that the qualification for such an exemption may cease outside the country of origin;

AWARE that such specimens need CITES permits or certificates for subsequent international trade;

RECOGNIZING that, in the absence of an export permit issued in the country of origin, it may be difficult to issue such CITES permits or certificate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artificially propagated'

1. ADOPTS the following definitions for terms used in this Resolution:

- a) 'under controlled conditions' means in a non-natural environment that is intensively manipulated by human intervention for the purpose of plant producti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ntrolled condition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illage, fertilization, weed and pest control, irrigation, or nursery operations such as potting, bedding or protection from weather;
- b) 'cultivated parental stock' means the ensemble of plants grown under controlled conditions that are used for reproduction, and which must have been, to the satisfaction of the designated CITE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 i)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ITES and relevant national laws and in a manner not detrimental to the survival of the species in the wild; and
 - ii) maintained in sufficient quantities for propagation so as to minimize or eliminate the need for augmentation from the wild, with such augmentation occurring only as an exception and limited to the amount necessary to maintain the vigour and productivity of the cultivated parental stock; and
- c) 'cultivar' means, following the definition of the 8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an assemblage of plants that (a) has been selected for a particular character or combination of characters, (b) is distinct, uniform, and stable in these

대량의 인공증식된 식물을 수출하는 당사국은 야생 식물의 보호를 지속하고 인공증식된 식물의 수출자로 하여금 협약의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한편 서류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목하며, 식물표본들이 주해로 명시된 CITES 규정들의 예외조항 하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고, 전술한 예외조항의 자격요건이 원산지 국가 외부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술한 표본들의 후속적인 국제거래를 위해 CITES 승인서 혹은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수출승인서가 없는 경우, 전술한 CITES 승인서 혹은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바,

협약 당사국총회는

‘인공증식된’의 정의에 관하여

1. 본 결의문 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채택한다.
 - a) ‘통제된 조건 하에’는 식물 생산을 목적으로 인간의 개입으로 집중적으로 조작된 비자연적 환경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된 조건의 일반적 특성에는 경작, 비료 사용, 잡초 및 해충 방제, 물 주기, 모판이나 화분 재배 또는 날씨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육묘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 b) ‘재배된 부모 군체’란 생식용으로 사용되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성장된 식물 전체를 의미하고, 그런 군체들은 수출국의 지정 CITES 당국이 만족할 수준까지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i) CITES 규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야생종의 생존에 유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 ii) 야생으로부터 증식 필요성을 최소화 혹은 배제할 수 있도록 번식용으로 충분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증식 과정은 예외적인 경우로만 실시되고 양식된 부모 군체(종군)의 성장력 및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c) ‘재배종’이란,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의 제8판의 정의에 따라, (a) 특정 특성 혹은 특성들의 조합용으로 선택된, (b) 이런 특성들 측면에서 두드러진, 균일한 그리고 안정적인, 그리고 (c)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번

characters, and (c) when propagated by appropriate means, retains those characters (but see Article 9.1 Note 1)²⁾

2. DETERMINES that the term 'artificially propagated' shall be interpreted to refer to plant specimens:
 - a) grown under controlled conditions; and
 - b) grown from seeds, cuttings, divisions, callus tissues or other plant tissues, spores or other propagules that either are exempt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have been derived from cultivated parental stock;
3. DETERMINES that plants grown from cuttings or divisions are considered to be artificially propagated only if the traded specimens do not contain any material collected from the wild; and
4. RECOMMENDS that, for populations of Appendix-I listed species, an exception may be granted and specimens deemed to be artificially propagated ~~if grown from wild collected seeds or spores only~~ if, for the taxon involved:
 - a) i) the establishment of a cultivated parental stock present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practice because specimens take a long time to reach reproductive age, as for many tree species;
 - ii) the ~~seeds or spores~~ propagules are collected from the wild and grown under controlled conditions within a range State, which must also be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seeds or spores~~ propagules;
 - iii) the relevant Management Authority of that range State has determined that the collection of ~~seeds or spores~~ propagules was legal and consistent with relevant national laws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species; and
 - iv) the relevant Scientific Authority of that range State has determined that:
 - A. collection of ~~seeds or spores~~ propagules was not detrimental to the survival of the species in the wild, based on a non-detriment find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the Convention; and
 - B. allowing trade in such specime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ervation of wild populations;
 - b) at a minimum, to comply with subparagraphs 4 a) iv) A. and B. above:
 - i) collection ~~seeds or spores~~ propagules for this purpose is limited in such a manner such as to allow regeneration of the wild population;
 - ii) a portion of the plants produced under such circumstances is used to establish plantations to serve as cultivated parental stock in the future and become an additional source of ~~seeds~~

²⁾ Article 9.1 Note 1 states that no new taxon of cultivated plants (including a cultivar) can be regarded as such until its category name and circumscription have been formally published.

- 식될 때, 그런 특성들을 보유하는 식물 전체를 의미한다. (단, 제9조제1항의 주1 참조)²⁾
2. '인공증식된'이란 용어가 다음 상태로 성장한 식물표본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 a) 통제 조건 하에서 성장한 식물. 그리고
 - b) 협약 규정에 따라 적용 면제 대상이거나 재배된 부모군체(종군)으로부터 파생된, 종자, 자른 가지, 부분, 유합조직(callus tissues) 혹은 기타 식물조직, 포자 혹은 기타 주아(propagules)로부터 성장한 식물.
 3. 자른 가지 혹은 부분으로부터 성장한 식물들은 거래되는 표본들에 야생으로부터 수집된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인공증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결정한다.
 4. 부속서 I 등재 식물 개체군의 관련 분류군에 대해서 아래에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야생수집 종자로부터 성장한 혹은 포자로부터 성장한 경우에만 인공증식된 것으로 간주할 것을 권고한다.
 - a) i) 재배된 부모군체(종군)의 구축이 표본들이 많은 나무 종들과 관하여 생식연령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
 - ii) 종자 혹은 포자가 주아가 야생에서 수집되어 해당 종자 혹은 포자의 주아의 원산지국가에 해당하는 분포국 내에서 통제 조건 하에서 성장한 경우,
 - iii) 분포국의 관련 관리당국이 종자 혹은 포자의 주아의 수집이 합법적이고 해당 종들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국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리고
 - iv) 분포국의 관련 과학당국이 다음 사실을 결정한 경우.
 - A. 종자 혹은 포자의 주아의 수집이 협약 제3조에 따른 거래영향평가 결과 야생 상태에서 해당 종들의 생존에 치명적이지 않고, 그리고
 - B. 전술한 표본 거래 허용이 야생 개체군의 보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b) 최소한 상기의 4 a) iv) A 및 B를 준수하기 위해,
 - i) 그런 목적상 종자 혹은 포자의 수집은 야생 개체군의 재생을 허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제한된다.
 - ii) 전술한 환경 하에서 생산된 식물의 일부는 미래에 재배된 부모군체(종군)으로서 활용되고, 종자 혹은 포자의 주아의 추가적인 출처가 되어 야생으로부터의 종자 혹은 포자를 주아를 수집할 필요성을 절감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플랜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된다.

²⁾ 재배식물(재배종도 포함)의 새로운 분류군은 그 분류 명칭 및 정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재배종으로 간주될 수 없다.

~~or spores propagules~~ and thus reduce or eliminate the need to collect ~~seeds or spores propagules~~ from the wild; and

- iii) a portion of the plants produced under such circumstances is used for replanting in the wild, to enhance recovery of existing populations or to re-establish populations that have been extirpated; and
- c) in the case of operations propagating Appendix-I species for commercial purposes under such conditions they are registered with the CITES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Conf. 9.19 (Rev. CoP15) on *Guidelines for the registration of nurseries exporting artificially propagated specimens of Appendix-I species*;

Regarding grafted plants

5. RECOMMENDS that:

- a) grafted plants be recognized as artificially propagated only when both the root-stock and the graft have been taken from specimens that have been artificially propag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above; and
- b) grafted specimens consisting of taxa from different Appendices be treated as specimens of the taxon included in the more restrictive Appendix;

Regarding hybrids

6. DETERMINES that:

- a) hybrid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ven though not specifically included in the Appendices if one or both of their parents are of taxa included in the Appendices, unless the hybrids are excluded from CITES controls by a specific annotation in Appendix II or III; and
- b) regarding artificially propagated hybrids:
 - i) plant species or other taxa included in Appendix I shall be annot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 if the provisions relevant to the most restrictive Appendix are to apply;
 - ii) if a plant species or other taxon included in Appendix I is annotated, an export permit or re-export certificate shall be required for trade in specimens of all artificially propagated hybrids derived from it; but
 - iii) artificially propagated hybrids derived from one or more unannotated Appendix-I species or other taxa shall be regarded as being included in Appendix II and entitled therefore to all exemptions applicable to artificially propagated specimens of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I;

- iii) 전술한 환경 하에서 생산되는 식물의 일부는 기존 개체군들의 회복을 증가시키거나 적출된 개체군을 재구축하기 위해 야생에서 재식목하기 위해 활용된다.
- c) 전술한 환경 하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부속서 I 종들을 증식시키는 운영시설인 경우에, 부속서 I 종들의 인공증식된 표본들을 수출하는 중요장의 등록 지침에 관한 결의문 Conf. 9.19(CoP15 개정)에 따라 CITES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접목된 식물에 관하여,

5. 다음을 권고한다.
 - a) 접목된 식물들은 대목(root-stock) 및 접목부 모두가 상기 용어의 정의에 준하여 인공증식된 표본들로부터 채취된 경우에만 인공증식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 b) 각기 다른 부속서 상의 분류군으로 구성된 접목된 표본들은 더 제한적인 부속서 상에 포함된 분류군의 표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잡종에 관하여

6.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 잡종이 부속서 II 또는 III의 특정 주해로 CITES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모종의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부속서에 포함되는 분류군인 경우 잡종은 명시적으로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b) 인공증식된 잡종에 관하여
 - i) 부속서 I에 등재된 식물 종이나 분류군이 가장 제한적인 부속서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협약 15조에 따라 주해가 정해져야 한다.
 - ii) 부속서 I에 등재된 식물종 또는 분류군에 주해가 있는 경우, 파생된 모든 인공증식된 잡종의 표본의 거래에는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된다.
 - iii) 그러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해가 없는 부속서 I 종 또는 다른 분류군으로부터 파생된 인공증식된 잡종은 부속서 II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에 적용되는 모든 면제사항이 적용된다.

Regarding cultivars

7. DETERMINES that cultivar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unless excluded by a specific annotation in Appendix I, II or III;

Regarding flaked seedlings of Appendix-I orchids

8. RECOMMENDS that flaked seedlings of orchid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 obtained in vitro, in solid or liquid media, and transported in sterile containers, be interpreted as being exempt from CITES control only if they have been artificially propag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provided above,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 paragraph 4, and Article I, paragraph (b) (iii), and agreeing to a derogation from Resolution Conf. 9.6 (Rev. CoP16)³⁾ for this exempt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plant obtained through assisted production' ('assisted production')

X1. ADOPTS the following definition for the terms used in this Resolution:

- a) 'assisted production' shall be used to refer to plants that:
- i) do not comply with the definition of 'artificially propagated', and
 - ii) are considered not to be 'wild' because they are propagated or planted in an environment with some level of human intervention for the purpose of plant production;
- b) propagation material for 'assisted production' plant can be derived from plant material that is exempt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derived from artificially propagated plants, or derived from plants grown in an environment with some level of human intervention or derived from plant materials collected sustainably from wild pop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ITES and relevant national laws and in a manner not detrimental to the survival of the species in the wild.

X2. AGREES that, for trade in specimens from 'assisted production' plants of species included in the Appendices, the provisions of Articles III, IV and V of the Convention shall continue to apply, in particular including:

- a) A Management Authority of the State of export is satisfied that the specimen to be exported was not obtained in contravention of the laws of the State for the protection of the species; and
- b) A Scientific Authority of the State of export has advised that the export will not be detrimental to the survival of the species.⁴⁾

³⁾ Corrected by the Secretariat following the 16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riginally referred to Resolution Conf. 9.6 (Rev.).

⁴⁾ This does not apply for Appendix III species.

재배종에 관하여

7. 재배종들은 부속서 I, II 혹은 III 상의 특정 주해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경우, 협약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용기에 담긴 부속서 I 등재 난초의 배양 규모에 관하여

8. 무균 컨테이너로 운반되며 용기 내의 고체 또는 액상 배지에서 배양된 부속서 I 등재 난초 종의 규모는 협약 제 7조제4항 및 제1조제2항제다호의 규정 및 결의문 Conf. 9.6(CoP16 개정)³⁾의 개정 등에 따라 상기 정의에 따른 인공증식으로 증식된 경우에 한하여 CITES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권고한다.

‘보조 생산을 통해 확보된 식물(보조 생산)’의 정의에 관하여

X1. 본 결의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보조 생산’이란 다음의 식물을 의미한다.

i) ‘인공증식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ii) 식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일정 부분 인가가 조성한 환경에서 생육하였기 때문에 ‘야생’ 식물로 고려되기 어려운 식물

b) ‘보조 생산’을 위해 증식되는 식물은 협약의 적용 면제 대상이거나, 인공증식된 식물이거나, 인가가 조성한 환경에서 생육한 식물이거나 CITES와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야생 개체군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확보된 식물이어야 한다.

X2. 부속서에 등재된 식물 종의 ‘보조 생산’ 표본의 거래에 있어 협약 제3조, 제4조,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a) 수출국의 관리당국은 생물종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을 준수하여 확보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b) 수출국의 과학당국은 해당 수출이 종의 생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⁴⁾

³⁾ 제16차 당사국총회 후에 사무국에 의해 정정됨. 본디 결의문 Conf. 9.6 (개정)을 참고.

⁴⁾ 부속서 III 등재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Regarding plant specimens in international trade under exemptions

9. DETERMINES that specimens that cease to qualify for an exemption from the provisions of CITES, under which they were legally exported and imported, are deemed to originate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cease to qualify for the exemption;

Regarding enforcement for plants

10. RECOMMENDS that Parties ensure that:
- a) enforcement officers are adequately informed of CITES requirements, procedures governing inspection and clearance of CITES plant specimen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detection of illegal trade;
 - b) enforcing agencies obtain access to materials and expertise enabling identification of plant specimens in trade, including whether the specimens are of wild or artificially propagated origin;
 - c) enforcing agencies utilize annual reports, plant health documents, nursery catalogues and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to detect possible illegal trade;
 - d) enforcing agencies maintain close liaison with the Management and Scientific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setting and implementing enforcement priorities; and
 - e) material in trade is carefully checked in order to improve enforcement and in particular that plants declared to have been artificially propagated are checked both on import and on export;

Regarding trade in salvaged plant specimens

11. RECOMMENDS that:
- a) whenever possible, Parties ensure programmes of environment modification do not threaten the survival of plant species included in the CITES Appendices, and that protection of Appendix-I species in situ be considered as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obligation;
 - b) Parties establish salvaged specimens in cultivation where concerted attempts have failed to ensure that such programmes do not put at risk wild populations of species included in the CITES Appendices; and
 - c) international trade in salvaged specimens of Appendix-I plants, and of Appendix-II plants whose entry into trade might otherwise have been considered detrimental to the survival of the species in the wild, be permitted where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i) such trade would clearly enhance the survival of the species, albeit not in the wild;
 - ii) import is for the purposes of care and propagation of the species; and
 - iii) import is by bona fide botanic garden or scientific institution; and

협약 적용을 면제받아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식물표본에 관하여

9. 합법적으로 수출입이 되었으나 CITES 협약 면제 근거가 사라진 표본은 그 근거가 사라진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기로 결정한다.

식물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10. 당사국이 다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 a) 단속관은 CITES 요건, CITES 식물 표본의 검사 및 통관에 적용되는 절차 및 불법거래 포착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 b) 단속기관은 표본이 야생인지 인공증식된 것인지 여부 등 식물표본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및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확보한다.
 - c) 단속기관은 불법거래를 포착하기 위하여 연례보고서, 식물보건보고서, 중요장 일람표 및 기타 정보원을 활용한다.
 - d) 단속기관은 우선 단속사항을 정립하고 이행할 목적으로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 e) 단속을 향상시키고 특히 인공증식으로 신고된 식물이 수입 및 수출 시에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거래자료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구제된(Salvaged) 식물 표본의 거래에 관하여

11.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가능한 경우 당사국은 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부속서 I 종의 현지내 보호는 국내적 및 국제적 의무로 간주되도록 보장한다.
 - b) 협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야생 개체군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실패한 경우 당사국은 재배중인 구제된 표본을 정한다.
 - c) 거래에 편입되면 야생종의 생존에 유해할 수 있는 부속서 I 식물 및 부속서 II 식물의 구제된 표본에 대한 국제거래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 i) 거래가 야생에서의 생존은 아니라 하더라도 종의 생존을 명백하게 향상하는 경우
 - ii) 수입이 종의 관리와 증식의 목적을 위한 경우.
 - iii) 수입이 실제 식물원 또는 과학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Regarding education about plant conservation through CITES

12. RECOMMENDS that:

- a) Parties routinely provide updates of information on all aspects of CITES implementation for plants for publication in scientific, horticultural or plant trade journals and in the publications of plant associations;
- b) Parties regularly provide updates of information on all aspects of CITES implementation to botanic gardens, tourist organizations and releva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further dissemination to the general public;
- c) Parties develop and maintain a good liaison with national plant-trade organizations, to inform them about all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CITES for plants;
- d) the Secretariat develop and maintain a good liaison with international plant-trade organizations and botanic garden associations (in particular with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otanic Gardens and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and
- e) the Secretariat distribute information on the potential conservation benefits that may be derived from artificial propagation and, where appropriate, encourage artificial propag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removal of specimens from the wild; and

13. REPEALS Resolution Conf. 9.18 (Rev.) (Fort Lauderdale, 1994, as amended at Harare, 1997) – *Regulation of trade in plants.*

CITES를 통한 식물 보전 교육에 관하여

12. 다음을 권고한다.

- a) 당사국은 과학적, 원예학적, 또는 식물 거래에 관한 학술지 및 식물협회 간행물에 식물에 대한 CITES 이행의 모든 측면을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b) 당사국은 식물원, 관광협회 및 관련 비정부조직에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도록 한다.
- c) 식물에 대한 CITES 이행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당사국은 국내 식물거래 조직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한다.
- d) 사무국은 국제 식물거래 조직 및 식물원 협회(특히, 국제식물원협회 및 국제식물원보전위원회)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한다.
- e) 사무국은 인공증식에서 기인할 수 있는 보전의 잠재적인 편익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야생에서 표본을 제거하는데 대한 대안으로 인공증식을 증진한다.

13. *식물의 거래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결의문 Conf. 9.18(개정) (포트로더데일, 1994, 1997년 하라레에서 수정됨)을 철회한다.

